

개화기부터 미군정기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괄적 고찰*

김혜정**

1. 머리말

국어과 교육은 '국어'라는 교과목의 성립을 전제로, 국가적 수준의 교육과정 이론의 수립과 그 실행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국어과 교육과정¹⁾(이하, '교육과정')은 7차례의 개정을 거듭해 오면서 교육 이론과 방법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 개념의 학교 교육이 처음부터 오늘날의 '교육과정(curriculum)'의 형태로 문서화된 것은 아니었다. 근대 교육으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개화기에는 '교육과정'이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연구 지원 과제에 의해 씌어진 것임.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1) 교육과정은 그 수준에 따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위계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하부 주체로 내려오면서 변형·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구성되는 민간 차원의 교육과정도 존재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인식된다.

라는 명칭도 없었을 뿐더러, 세부적인 교과와 개념이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근대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에, 공교육이나 가르칠 내용의 세분화에 따른 교과 개념이 팽배해 있었다.

본고는 1955년 1차 교육과정의 시작되기 이전에,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성문화된 교육 활동 계획이 공포되지 않았던 시기, 즉 개화기로부터 미군정기까지의 교육과정의 전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교육과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초기의 유사(類似) 교육과정의 형태를 재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고찰을 통해 근대적 개념의 우리 교육과정의 시작을 개화기까지 소급하여 수립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뿌리를 자생적인 것에서 찾으려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개화기 관보에 실린 ‘칙령’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의 초기 문서 형태들을 살펴볼 것이다. 단, 국어(國語) 또는 어문(語文)과 관련된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끝으로, 본고는 어문 정책사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며, 사립학교나 어문 연구기관에서 제기된 민간 차원의 교육과정 문건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는다.

2. 본문

1) 개화기(1895년~1910년)의 어문 교육 환경

(1) ‘교육’ 관련 기관의 설립

개화기에 교육을 담당하던 관청은 ‘학무아문(學務衙門)’으로서 오늘날 교육부에 해당하는 정부 부서이다. 이 ‘학무아문’은 1894년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의 개혁안에 따라, 의정부 아래에 둔 8아문 가운데 하나로서, 기존의 예조 업무 일부와 관상감(觀象監) · 육영공원(育英公院) · 사역원(司譯院)의 업무, 그리고 교육과 학무행정을 관리한 곳이었다.

직제는 학무대신(學務大臣) 밑에 총무국 · 성균관상교서원사무국(成均館庠校書院事務局) · '전문학무국(專門學務局)' · '보통학무국(普通學務局)' · 편집국 · 회계국(會計局) 등 6국을 두었는데, 이 가운데, 전문학무국은 중학교 · 대학교 · 기예학교 · 외국어학교 · 전문학교 · 사범학교에 관한 사무를 맡고, 보통학무국은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관장하였다.

이는 1년 뒤, '학부(學部)'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편제도 대신관방(大臣官房:비서관 · 문서과 · 회계과), 학무국(2등국:소학교 및 학령이동취학, 사범학교 · 외국어학교 · 전문학교 · 기예학교 · 외국유학생에 관한 사항), 편집국(3등국:교과용 도서번역, 편집, 검정, 도서구입 · 보존 ·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등으로 통폐합되었다. 기존의 성균관 등 유교 관련업무와 관상감²⁾의 사무는 별도의 관제에 따라 학부대신 감독하의 기구로 독립하였다. 따라서 학교 교육 제도와 관련된 일은 학무국이,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일은 편집국이 맡게 되었다.

(2) 개화기의 학교 어문 교육

개화기의 학교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민간 교육기관이 주도하였다. 1886년 육영공원이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였지만, 이후 선교사나 선각자들에 의해 설립된 학교들이 수적으로 많았고, 이들에 의해 근대 학교 교육이 활성화되었다. 선교사들에 의해 배재, 이화, 원산 및 경신 학교와 같은

2) 오늘날의 기상대와 비슷한 기관

신식 학교들이 세워졌으며, 이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교육 내용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학교에서 다루어진 민족 어문 교육의 목적은 모국어와 우리 한글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이었지만, 그 실제적인 시작은 1860년대 기독교의 성경과 찬송가를 보급하려는 선교사들이 한글을 교육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다. 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초기 어문 관련 교재들은 교수 용어까지도 우리 글과 말로 쓰였다는 점에서 개화기의 어문 교육에서 기존의 한자나 외국어보다 우리말, 우리글을 활용하는 일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화기 어문교육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의 성립

개화기에는 근대 국가 개념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육과정’ 개념이 없었고, 다만 ‘교과목’의 종류나 ‘교수지침’, ‘수업 방법’을 간단히 제시하는 수준의 행정적 성격의 공문이 있었다³⁾.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첫 번째 문서는 1895년에 공포된 ‘교육입국조서⁴⁾’와 이후 7월에 칙령으로 반포된 ‘소학교령’의 ‘교칙대강(校則大綱)⁵⁾’이다.

3) 교육과정에 준하는 법령, 규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념/관, 교육방법, 교과관 등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는 허재영(2002)의 논문(어문교육 정책사)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차원의 교육 운동에 대해서는 조희정(2002)의 논문(어문교육연구사)을 참고할 수 있다.

4) 1895년 2월, 고종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조서로서, 갑오경장에 영향을 받았으며 구 교육과 신교육의 전환기를 마련한 조서이다. 근본이념은 “교육이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으로서, 교육구국운동의 가치를 내걸고 있으며, 3대 강령으로는 덕, 체, 지의 3육의 제시로 전인적 인간 설정, 교육의 사회 개조 기능 강조, 교육의 의무화 계몽을 주장하였다.

5) 소학교 교칙대강(小學校 校則大綱)의 제3조에 규정된 소학교 고등과에 「국어문법」이 처음으로 정식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개화기의 국가적 차원의 교육 이념을 보여주는 첫 번째는 고종의 <교육칙어(敎育勅語)>를 비롯한 공식적 문서이다. 아래 인용된 문서에는 개명(開明)하려던 당시의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교육에 의한 입국(立國)의 지를 밝혔다. 고종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근대국가를 건설함에 있어 교육을 국가중흥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교육의 목적·성격·방향 등을 이 조서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 근대교육 설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학부관제(學部官制;1895)·각학교관제(各學校官制;1895년 이후) 등 근대적인 학제(學制)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짐이 생각건대 조종(祖宗)께서 업(業)을 시작하시고 통(統)을 이으사 이제 504년이 지냈도다. 이는 실로 우리 열조(列朝)의 교화와 덕택이 인심에 젖고 우리 신민(臣民)이 능히 그 충애(忠愛)를 다 한데 있도다. 그러므로 짐이 한량없이 큰 이 역사를 이어 나아가고자 밤낮으로 걱정하는 바는 오직 조종의 유훈을 받들려는 것이니 너희들 신민은 짐의 마음을 본받을 지어다. 너희들 신민의 조선(祖先)은 곧 우리 조종이 보육한 어진 신민이었고 너희들 신민은 또한 너희들 조선의 충애를 잘 이었으니 곧 짐이 보육하는 어진 신민이로다. 짐과 너희들 신민이 힘을 같이하여 조종의 큰 터를 지켜 억만년 평안함을 이어가야 할지로다. 아아 짐이 교육에 힘쓰지 아니하면 나라가 공고하기를 바라기 심히 어렵도다. 세계의 형세를 살펴보건대 부강하고 독립하여 응시(雄視)하는 모든 나라는 모두 다 그 인민의 지식이 개명하였도다. 이 지식의 개명은 곧 교육의 선미(善美)로 이룩된 것이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라 하리로다. 그러므로 짐은 군사(君師)의 자리에 있어 교육의 책임을 몸소 지노라. 또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된 이름과 실제 소용을 먼저 분별하여야 하리로다. 독서나 습자로 옛사람의 찌꺼지를 줍기에 몰두하여 시세의 대국에 눈이 어둔 자는 비록 그 문장이 고금을 능가할지라도 쓸 데 없는 서생에 지나지 못하리로다. 이제 짐이 교육의 강령을 보이노니 헛이름을 물리치고 실용을 취할지어다. 곧

덕을 기르지니 오류의 행실을 닦아 속강(俗綱)을 문란케 하지 말고 풍교(風敎)를 세워 인세(人世)의 질서를 유지하여 사회의 향복을 증진시킬지이다. 다음은 몸을 기르지니 동작을 떼떼이 하고 근로와 역행을 주로 하며 게으름과 평안함을 탐하지 말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말며 너희의 근육을 굳게 하고 뼈를 튼튼히 하여 강장하고 병없는 낙을 누리 받을지이다. 다음은 지(智)를 기르지니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추궁함으로써 지(智)를 닦고 성(性)을 이룩하고 아름답고 미운 것과 옳고 그른 것과 길고 짧은 데서 나와 남의 구역을 세우지 말고 정밀히 연구하고 널리 통하기를 힘쓸지이다. 그리고 한물의 사(私)를 꺾지 말고 공중의 이익을 도모할지이다. 이 세가지는 교육의 강기이니라. 짐은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너희들 신민의 학식으로써 국가 중흥의 대공을 세우게 하려 하노니 너희들 신민은 충군하고 위국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덕(德)과 체(體)와 지(智)를 기르지이다. 왕실의 안전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도 또한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다. 너희들 신민이 선미한 경지에 다다르지 못하면 어찌 짐이 다스림을 이루었다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어찌 감히 그 책임을 다하였다 할 수 있고 또한 너희들 신민이 어찌 교육의 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다 하리오. 아버지는 이것으로써 그 아들을 고무하고 형은 이것으로써 아우를 권면하며 벗은 이것으로써 벗의 도움을 도를 행하고 분발하여 멋지 말지이다. 나라의 분한을 대적할 이 오직 너희들 신민이요, 국가의 모욕을 막을 이 오직 너희들 신민이니 이것이 다 너희들 신민의 본분이다. 학식의 등급으로 그 공효(功效)의 고하를 아뢰되 이러한 일로 상을 쫓다가 사소한 결단이 있더라도 너희들 신민은 또한 이것이 오직 너희들이 교육이 밝지 못한 탓이라고 말할지이다. 상하가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쓸지이다. 너희들 신민의 마음이 곧 짐의 마음이니 힘쓸지이다. 진실로 이와 같을진대 짐은 조종의 덕광을 사방에 날릴 것이요, 너희들 신민 또한 너희들 선조의 어진 지식과 착한 손자가 될 것이니 힘쓸지이다. (教育勅語, 고종, 1895)

이 문서에는 국어교육에 대해 “독서나 습자로 옛사람의 찌꺼지를 줍기에 몰두하여 시세의 대국에 눈이 어둔 자는 비록 그 문장이 고금을 능가할지라도 쓸 데 없는 서생에 지나지 못하리다. 이제 짐이 교육의 강령을 보이노니 헛이름을 물리치고 실용을 취할지어다.”라고 언급된다. 이는 근대적 교육이 과거의 경전 중심의 교육과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함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문교육도 칙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덕·체를 기르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 목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 이념에 맞는 길이었으며, 그에 따라 언어를 통한 교육,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내용의 총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왕을 통한 교시(敎示)는 당대 교육 담당자나 행정가와와의 합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이때 ‘독서’나 ‘습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국어교육의 내용 영역으로서의 ‘읽기’와 ‘쓰기’ 개념이 아니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문서 자체의 맥락에서 보면, ‘독서’와 ‘습자’는 ‘옛사람의 찌꺼기를 줍기’하는 정도의 국어 활동으로, 즉 ‘독서’의 대상은 한학(漢學) 중심의 유교 경전이고, ‘습자’의 대상은 ‘한자’를 쓰고 익히는 한자 쓰기 활동이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후 ‘독서’와 ‘습자’는 계속해서 소학교령의 문서에도 등장하는데,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학교령에 등장하는 교과목으로서의 ‘독서’와 ‘습자’는 근대적 개념의 교육 내용을 포함한 개념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일부의 ‘교칙대강’은 본격적인 국가 차원의 근대적 공교육이 시작됨을 알리는 문서이다. 정식 명칭은 ‘소학교 교칙대강’이며 줄여서 ‘교칙’이라고도 하였으며, 1905년 이후부터는 ‘교수요지(敎授要旨)’, ‘교수요목(敎授要目)’ 등으로 불리었고, 보통학교에서는 ‘교과과정’, 중등학교에서는 ‘학과과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전신이라 할 만하다.

1895년에서 1905년대까지, 즉 '교칙대강' 시기에는 학년 구분이나 학년 별 내용 배당이 없고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분배하는 정도의 교과 개념을 보이고 있다가, 1905년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학년에 따라 시간과 정도, 내용이 배당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에 관한 항목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근대적 교육과정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하겠다. 먼저 소학교령⁶⁾의 교칙대강 중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장(二章) 소학교의 편제급 남녀아동의 취학

소학교를 나누어 심상(尋常) · 고등(高等) 2과로 한다.

소학교 수업연한은 심상과는 3개년, 고등과는 2개년으로 한다.

제 8조 소학교의 심상과 교과목은 수신(修身) · 작문 · 습자 · 산술 · 체조로 한다. 시의(時宜)에 의하여 체조를 제(除)하며 또 본국지리 · 본국역사 · 도화(圖畵) · 외국어의 1과 혹은 수과(數科)를 가하고 여이를 위하여 재봉을 가한다.

소학교 고등과의 교과목은 수신 · 독서 · 작문 · 습자 · 산술 · 본국지리 · 본국역사 · 외국지리 · 외국역사 · 이과(理科) · 도화 · 체조로 하고 여이를 위하여 재봉을 가한다. …… (1895. 7. 19. 칙령 제145호 소학교령 중에서)

(한글 번역 및 진하계는 인용자 주)

-
- 6) 1906년 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38년 다시 소학교로 바뀌고 1941년에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97년 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 1895년 7월 학부(學部)에서 신학제의 제정을 바탕으로 '소학교령'을 제정, 공포하여 초등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심상과(尋常科) 3년, 고등과 2~3년의 제도를 설립하였다. 소학교령에는 아동의 신체 발달에 비추어 소학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 및 기능을 갖추기 위한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업 연한은 5~6년, 학령은 8~15세이며, 교원은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서 관립은 학부대신이, 공립은 관찰사(현 도지사)가 임명하였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교사도 채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에서 국어과의 하위 과목 편성을 보면, ‘독서’, ‘작문’, ‘습자(習字)’의 3과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교육과정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과’ 아래에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의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개화기에는 ‘교과목’이라고는 하지만, 국어라는 교과와 과목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강독의 주교재로 쓰인 책이 하나의 ‘교과명’이 되어왔던 중세 서당 교육의 전통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개화기의 신식학교에서 운영하는 과목의 시간배정을 보면, ‘독서’, ‘작문’, ‘습자’의 3과목을 합한 국어의 총 시간수가 전체 교육 시간수에서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것은 1895년에 개교한 소학교와 한성사범학교 같은 관학(官學)의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국어는 모든 과의 기초 도구교과로서 중요도를 인정받은 셈이다.

교육입국조서의 취지대로 소학교 교원의 충원을 목적으로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의 관제(1895. 4. 16)⁷⁾에 이어 한성사범학교 규칙(1895. 7. 23)이 제정 공포되는데, 이 중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관(一款) 총칙

.....

이관(二款) 학과급 정도

한성사범학교 본과학원에 과할 학과목은 수신 · 교육 · 국문 · 한문 · 역사 · 지리 · 수학 · 물리 · 화학 · 박물 · 습자 · 작문 · 체조로 한다. 단 시의에 의하여 제 과목중 1과목 혹은 수(數)과목을 감해도

7) 실제로 한성사범학교관제는 소학교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고종 32년(1895) 4월에 칙령 제79호로 반포하였으며, 이 관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의 관제가 되었다. 이후 같은 해 7월에는 한성사범학교와 그 부속소학교의 규칙이 제정 발표되었다.

가하다.

한성사범학교 본과학원의 수업년한은 2개년으로 한다.

한성사범학교속성과는 소학교교원의 급수(急需)에 응함을 위함이니
(其) 학과목은 수신 · 교육 · 국문 · 한문 · 역사 · 지리 · 수학 ·
이과 · 습자 · 작문 · 체조로 한다. 단 시의에 의하여 과목을 감함이 가
하다. ……

(1895. 4. 16. 칙령 제79호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규칙 중에서)

(한글 번역 표기 및 진하게 표시는 인용자 주)

여기서는 ‘독서’에 해당하던 과목명이 ‘국문’으로 바뀌면서, ‘국문’, ‘습자’, ‘작문’이 국어과의 하위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독서’가 ‘국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민족 어문에 대한 의식이 막연하던 상태에서 ‘국자(國字)와 국어문(國語文)’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즉, 강독 혹은 독본식의 행위 위주의 수업이 ‘국문’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 ‘국어’ 교과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세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유교 경전 해석 중심의 한학(漢學) 교육이 해체되면서, 동시에 국문(國文)에 대한 의식이 태동하고, 따라서 근대적 학교의 교과명으로서의 ‘어문’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보의 자료들을 참고로 하면, 국어과의 하위 과목 편성이, 1900년까지는 ‘독서’, ‘작문’, ‘습자(習字)’의 3과목으로 되어 있다가,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의 관제와 규칙이 제정 발표되면서, 교과목의 명칭이 ‘국문’, ‘습자’, ‘작문’으로 바뀌었다가, 1900~1907년 사이에 공포된 규칙에서는 ‘국어’ 한 과목으로, 1908년~1910년에는 국어와 한문을 통합하여 ‘國語及漢文’이라는 과목으로 통합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국어의 하위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되고, 이것이 다시 한문 과목과 통

합된 것은 일제가 한일합방을 하기 위한 준비의 수순으로서, 점차 민족어 문 교육을 약화시켜 가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 초기의 어문교육의 내용이 '독서, 습자, 작문' 등과 같은 교과목을 설정함으로써 언어 기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것처럼 보이나, '습자'와 '작문'이 어느 정도까지 현대적 개념의 '쓰기'와 '작문'에 가까운 것이었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실제 어문 정책사와 관련된 논의들에서는 소학교의 경우 심상과만 운영되었고, 한문 위주의 수업만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성사범학교 규칙이 학생들의 교육이 아니라, '교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에 해당하기는 하나, 당시의 교과 개념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에 몇 가지를 더 인용한다.

제 11조, 한성사범학교의 본과에 과할 **학과목의 정도(程度)**는 좌(左)같이 정함

학과정도표(學科程度表)

수신 : 人倫道德의 要旨 급 基督教法

국문 : 講讀

한문 : 講讀

교육 : 內外教育의 沿革 급 著名한 教育家의 傳記로부터 教育 급 教授의 原理 原則을 授하고 附屬小學校에 就하여 實地 授業의 方法을 練習함

역사 : 本國 급 萬國歷史

지리 : 本國 급 萬國의 政治地理와 地文의 初步

수학 : 算術 급 代數幾何의 初步와 其 教授法

물리 : 物理上의 緊要한 現象 급 定律

박물 : 動植物의 生理와 衛生

화학 : 普通化學上의 現象, 緊要한 元素 급 無機化合物의 性質

습자 : 楷行草의 三體 급 其 教授法

작문 : 日用書類 및 記事文 급 論說文

체조 : 普通體操 급 兵式體操

제 12조,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학원의 과하는 학과목의 정도는 죄같이 정함

학과정도표 -이하 생략)-

(한성사범학교 규칙, 1895. 7. 23., 진하계는 인용자주)

제 11조의 내용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교과 구분이 비교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학과목의 '정도(程度)'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학과의 교육 내용의 요지를 소략하게나마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일종의 각 교과별 교수요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개화기 교육과정의 원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문'을 비롯하여 '습자', '작문'은 각각 별개의 교과로 인식되었고, 그것이 '국문'의 하위 과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별개의 교과로 인식되었다면, '국문'과 '습자', '작문'은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위의 자료만으로는 선불리 판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습자'라는 것이 '해행초의 삼체 급 교수법'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 개념의 '습자'와 그 내용이 다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개화기 당시에는 국어와 국문에 대한 인식이 싹뻗고, 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팽배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한문과 한학은 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습자'는 그야말로 '楷書와 行書와 草書'의 세 가지 글씨체를 공부하는 교과이고, 한성사범학교의 '습자'과는 그 삼체를 익히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법을 공부하는 교과이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작문'은 오늘날의 '작문' 교과관과 비슷하다. 일용서류나 기

8) 그 과목은 수신, 교육, 국문, 한문, 역사, 지리, 수학, 지과(地科), 습자, 작문, 체조로서, 본과 내용과 유사하므로 생략함.

사문 및 논설문의 작성을 주로 공부한다는 것은, 그 이전의 중세 교육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생소했던, ‘실용문’이라는 텍스트 유형을 연습하게 함으로써 근대적 문장 쓰기를 교육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근대적 공교육이 시작되던 이 당시에도 유교와 도덕을 중시하는 ‘한학’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여전히 건재했는데, 이는 공교육과 동일하게 ‘성균관’과 ‘서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성균관상고서원사무국(成均館庠校書院事務局)’이 학무아문 밑에 존재하고 있었고, ‘성균관경학과규칙(成均館經學科規則)’을 똑같이 제정 공포하고 있었다⁹⁾는 점으로 알 수 있다. 개화기의 교육은 근대적 공교육과 전통 교육이라는 두 가지 체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성균관학과규칙 중 교과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款 總則

제 2款 學科 及 程度

제 2조 成均館經學科 學生의 課할 學科目은 三經四書 及 其 諺解綱目
(宋元明史并) 本國史, 作文으로 함
단 시의에 의하여 本國지리, 만국사, 萬國지리, 산술을 학습케 함
…… 中間 생략 ……

제 8조 學科目的 程度는 左갓치 함

學科	程度
三經	講讀
四書	
諺解	

綱目 : 宋元明史并

作文 : 日用書類, 記事, 論說, 經義

歷史 : 本國 及 萬國歷史

9) 성균관관계는 1895.7.2., 성균관학과규칙은 1895.8.9에 각각 관보에 고시된다.

衍文：本國 邑 萬國地誌

算術：加減乘除, 比率差分

(‘성균관경학과규칙’ 중에서, 1895. 8. 9., 진하게는 인용자주)

위의 ‘제 2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균관경학과와 중요한 교과 중의 하나가 ‘작문’이었음을 주지한다면, ‘작문’은 소학교령이나 한성사범학교령에서와 같이, ‘國語’ 또는 ‘國文’이 먼저 설정되고, 그와 관련해서 교수되거나, 또는 하위 과목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없이 별개 교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학교(후에 보통학교)와 성균관의 학과 규칙에 등장하는 ‘작문’이라는 교과목의 명칭이 같다고 해서, 그 교과 내용마저도 비슷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대적 ‘작문’이 실용적인 글쓰기의 교과라면, 성균관의 작문은 전통적인 개념의 ‘經義’ 중심 글쓰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위에서 특기할 사항은 한성사범학교규칙에 제시된 ‘國文’의 ‘학과 정도’는 단순히 ‘강독’인데, 성균관경학과와 학과는 ‘삼경’, ‘사서’, ‘언해’를 강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주교재(교과서)명이 하나의 교과명이 된 셈이다. 따라서 ‘삼경, 사서, 언해’는 교과목이면서, 동시에 교육 내용이므로, 무엇을 강독했는지 밝혀진다. 그러나 소학교령과 한성사범학교령의 ‘국문’은 그 교과목의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문자그대로의 ‘한문’이 아닌 ‘국문’으로 된 글이면 어떤 것이든지 강독의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화기 당시, ‘국문’ 교과목의 교재로 사용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개화기에 발행된 각급 학교의 민족어문 교과서 중 현존하는 교과서는 25종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¹⁰⁾ 이

10) 현존하는 25종의 교과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박봉배, 「한국 국어교육전사」, 1987: 93-96).

가운데 국정에 해당하는 국어 교과서는 학부 편집국에서 발간한 「國民小學讀本」, 「小學讀本」, 「新訂尋常小學」, 「普通學敎 學徒用 國語讀本」이다. 그 외 도서는 개인 혹은 사설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책이다.

이 중 ‘국민소학독본’과 신정심상소학의 차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소학독본」은 1895년 학부에서 발간한 최초의 소학교용 국어 독본이며, 「신정심상소학」은 소학교 심상과의 교재로 쓰인 책이다¹¹⁾. 이 책의 차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명	편저자	발행권자	권책수	사용문자	학교급	발행연월일	의형
國民小學讀本	學部 편집국	學部	단권	國漢山森文	초등	1895. 7.	한자/국판
小學讀本	學部 편집국	學部	단권	國漢山森文	초등	1895. 8.	국판
國文山理	리봉운	學部	단권	純國文	초·중등	1897. 1.	한자/국판
新訂 尋常小學	學部 편집국	學部	3권 3책	국한혼용문	초등	1897. 2.	국판
초등소학	대한국민교육회	김상만/고유상 주한영	8권 4책	국문 국한문	초등	1906. 12. 20.	국판
幼年必讀	玄弼	玄弼	4권 1책	국한혼용문	초등	1907. 5. 5.	국판
初等女學讀本	李原鏡	변영중	1권	국문과 한문	초등	1908. 3. 10.	국판
蒙學必讀	최재학		미상	순국문	초등		국판
노동야학독본	유길준	유길준	미상	국한문	초등/초보	1908. 7. 13.	국판
權敎必知	정윤수	안태영	2권 1책	국문	초보/초등	1908. 6. 20.	국판
최신 초등소학	정연호	정연호	4권 2책	국한혼용문	초등	1908. 7. 20.	국판
초등소학	진성관	진성관	미상	국문	초등		국판
보통학교 하도 용 국어독본	학부	학부	8권 8책	국한혼용문	초등	1907. 2~3.	국판
신라 초등소학	현채	현채	6권 6책	국한혼용문	초등	1909. 9~10.	국판
너스 독본	장지연	김상만	2권 2책	순국문		1906. 4. 5.	국판
鄒幼編科	강희석	이준구	2권 1책	순국문		1908. 7.	국판
국문초학	주시경	박문서관	단권	순국문	초등	1908. 2. 15.	국판
國語總字 捷徑	한승관	평양 광명서관	단권	순국문		1908. 12.	국판
大韓文典(全)	최광옥	안악유희회		국한문	초·중등	1908. 1.	국판
고등 소학독본	徽文義塾 / 편집부	徽文義塾	2권 2책	국한문	중등	1906. 11. 30. 1907. 1. 20.	국판
幼年必讀 釋義	현채	현채	2권 2책	국한문	교사용	1907. 6~7.	국판
초등작문법	원영의	이종경 / 임원상		국한문		1908. 10.	국판
대한문전	유길준	유길준	단권	국한문	초·중등	1909. 3.	국판
初等 國語語典	김희상	김희상	3권	국한문	초등	1908. 3.	국판
국어문전	주시경	주시경	단권	순국문		1910. 4.	국판

11) 위의 두 책의 차례는 ‘허재영,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기초 연구 제2차 집담회자료 집, 2003:29’에서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국민소학독본과 신정심상소학은 모두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다.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본으로 출간되어 있다.

- 第1課 大朝鮮國
- 第2課 廣智識
- 第3課 漢陽
- 第4課 我家
- 第5課 世宗大王紀事
- 第6課 商事及交易
- 第7課 植物變化
- …… 이하 생략 ……

권1 목록

- | | | |
|------------------|--------------------|-------|
| 제1과 學校 | 제2과 勉勵 | 제3과 蟻 |
| 제4과 四大門과 및 四小門 | 제5과 東西南北이라 | |
| 제6과 時 | 제7과 馬와 牛라 | |
| 제8과 農工商 | 제9과 曉 | |
| 제10과 虹 | 제11과 苦는 樂의 種이라 | |
| 제12과 雀 | 제13과 입은 훈아이라 | |
| 제14과 金志學 | 제15과 부엌이가비들기 | |
| 제16과 食物 | 제17과 쥐의 이이기 | |
| 제18과 으들되는 者의 道 | 제19과 正直 훈 兒孩 | |
| 제20과 貪心잇는개라 | 제21과 和睦 훈 家眷(一) | |
| 제22과 和睦 훈 家眷(二) | 제23과 貪慾은 그몸을 亡홈이라 | |
| 제24과 손가락웃이라 | 제25과 清潔 훈 계하라 | |
| 제26과 蠅과 飛蛾의 이이기라 | 제27과 조고마훈 羊이라 | |
| 제28과 我國 | 제29과 가마귀와 여호의 이이기라 | |
| 제30과 葡萄田 一 | 제31과 葡萄田 二 | |
-
- | | |
|-------------|--------------|
| 券二目錄 | |
| 第一課 兵士라 | 第二課 運動이라 |
| 第三課 智成의 智慧라 | 第四課 張維의 이이기라 |

- | | |
|------------------------|--------------------|
| 第五課 누에라 | 第六課 여호라 |
| 第七課 木理라 | 第八課 기름이라 |
| 第九課 禮와 信과 仁이라 | 第十課 동모를 갈리는 法이라 |
| 第十一課 소곰이라 | 第十二課 小野道風の 이익기라 |
| 第十三課 익킬 찻이란 字라 | 第十四課 솟이라 |
| 第十五課 杜鵑이라 | 第十六課 雪이라 |
| 第十七課 訓練이라 | 第十八課 司馬溫公 어런씨 이익기라 |
| 第十九課 여호와 괴의 이익기라 | 第二十課 달팽이라 |
| 第二十一課 回水라 | 第二十二課 時計를 보는 法이라 一 |
| 第二十三課 時計를 보는 法이라 二 | |
| 第二十四課 職業에는 貴賤이 업는 것시라 | |
| 第二十五課 가마귀가 조개를 먹는 이익기라 | |
| 第二十六課 無識한 스품이라 一 | 第二十七課 無識한 스품이라 二 |
| 第二十八課 老人이라 | 第二十九課 山應聲이라 一 |
| 第三十課 山應聲이라 二 | |
| 第三十一課 사슴이 물을 거울 슴음미라 | |
| 第三十二課 生覺할 일이라 | |

券三

- | | |
|----------------------------|---------------------|
| 第一課 萬壽聖節이라 | 第二課 비호기를 勸흥이라 |
| 第三課 塙保已一의 話라 | 第四課 소경이라 |
| 第五課 警察이라 | 第六課 虎와 狐의 話라 |
| 第七課 華盛頓의 話라 | 第八課 心の 柀이라 |
| 第九課 孝鼠의 이야기라 | |
| 第十課 英祖朝게어서 褥를 還給한 신 이익기라 | |
| 第十一課 李時白이 甬을 밧치지 아니한 이익기라 | |
| 第十二課 宿癩의 話라 | 第十三課 鳥똥을 願흥는 問答이라 |
| 第十四課 菊花라 | 第十五課 紀元節이라 |
| 第十六課 鶯이라 | 第十七課 雀이 鶯의 巢를 奪흥 話라 |

第十八課 書冊을 讀는 法	第十九課 繪와 圖라
第二十課 日本의 居留地의 地圖라	
第二十一課 山과 河라	第二十二課 蜜蜂이라
第二十三課 狡猾한 馬라	第二十四課 地球의 回轉이라
第二十五課 四節이라	第二十六課 二年의 月日이라
第二十七課 人의 一生이라	第二十八課 正성이라
第二十九課 獸의 王이라	第三十課 養生이라
第三十一課 順明의 鳩라	第三十二課 船이라
第三十三課 武器라	第三十四課 軍士라

개화기에 발간된 대부분의 교재는 국문전용을 지향하여 편찬되었는데¹²⁾, 위의 경우와 같이, 갑오경장 직후의 어문 교과서를 보면, 문장의 거의 전부가 문어체 문장에다가 어려운 한자어구가 많이 들어있고, 띄어쓰기 대신에 그 자리에 쉼표로 표시되어 있으며, 한 책 내에서도 철자가 통일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준다. 텍스트 유형(예컨대, 장르 개념)이나 텍스트 구조(예컨대, 서-본-결)와 같은 글의 형식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기보다, 민족 의식을 고취하거나, 근대화나 개화 계몽적 의미, 문장기교 차원의 수사법 제시, 특히 신정심상소학에서와 같이, 기독교적 교리나 성경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 등 주제 중심의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국문' 교과서의 교육 내용은 어떤 의도나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한글'로 표기된 신식 텍스트를 '읽는 것'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12) 교과서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개화의 초기는 난해한 한자가 많은 교과서였는데, 1900년대 초부터는 언문일치의 순국문에 가까운 문장으로 발전하다가, 또다시 1907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문구가 많은 문장으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제의 언어정책과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일치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급진적 개혁에 따른 반작용이라고도(박봉배, 1987:93) 볼 수 있다.

이렇듯 근대적 공교육의 ‘국문’ 교과는 표면적으로는 ‘한글로 표기된 국문을 강독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국문 본위’의 어문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칙령으로 발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한문 중심의 언문일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독’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문’ 교과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교과적 중요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즉 언문일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원활한 표현과 이해’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문’ 교과의 교재로 쓰인 두 교과서의 목차를 비교해 보면, 어떤 동일한 기준에 의해 단원이 구성되었거나, 제재가 선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언문일치체의 연습을 위한 강독 교재일 뿐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하위 교육 내용의 체계적인 구성 원리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의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을사조약(1905년)으로 인해 일제의 통감부가 들어서고, 1910년까지 5년간 식민지 교육을 위한 정지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06년 ‘보통학교령’을 공포하여 「독서」, 「작문」, 「습자」를 「국어」로 합하고, 「일어」를 「국어」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1908년, 「사립학교령(私立學校令)」으로 사립학교의 자유재량권을 제한하였고, 학술 연구와 교육 발전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학회령(學會令)」을 공포하여 어문 연구 활동을 제한하였다. 결국 통감부 설치 이후에 「일본어」 과목은 필수 과목이 되었고, 「일본어과」가 점차 강화되면서 우리말은 ‘조선어과’로 명맥만 잇는 상황이 되었다. 일제는 1911년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을 공포하고 모든 교과서를 일본어로 기술하게 하면서 그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글로

기술한 교과서를 판매금지하고 심지어 몰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수 용어도 일본어를 쓰게 했다. 이 당시 교과명은 ‘국어’에서 ‘조선어’로 강등되었으며, 국어과는 일본어과에 비해 반도 안 되는 수업 시수를 할애 받았는데, 그나마도 1938년경부터는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미명 아래 폐과되었다. 그러나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운동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과 1936년 표준어 사정, 그리고 1942년의 조선어학회 사건 등으로 이어진다(이에 대해서는 민족어문 정책사 참조).

일제강점기의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공문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권이 침탈되었기 때문에 공교육 또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교육령’은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교육과정의 전신이라 볼 수 없지만, 여기서는 단지 이 시기에 총독부에 의해 4차례 공포된 ‘조선교육령’ 문서를 통해 일제의 공교육 탄압상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차 조선교육령(1911~1922)은 한국의 학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었다.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을 단축시켜 한국인에게 저급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한편 특히 초등교육에 치중하게 하고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저급한 근로인을 만들기 위한 실업교육 내지 직업교육을 하도록 한 데 있다. 또한 일본어를 보급해서 언어를 통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말살하고 일본의 생활 양식을 강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차 조선교육령(1922~1938) 시기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희유정책기 또는 문화통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표면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을 확충하게 되고, 「조선어」와 「일본어」를 같이 필수과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교육제도에서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3차 조선교육령(1938~1943) 시기에는 각급학교의 명칭을 일본인의 것과 같이 하고, 「조선어」를 수의(隨意)과목으로 하여 사실상 그것을

폐지한다. 그리고 교육방침으로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의 세 가지를 내걸었다.

일제는 소위 내선일체 즉 일본과 조선은 일체라는 구호를 내걸고 각급 학교의 명칭을 일본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보통학교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가 되고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가 되었으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교과목 중에서 조선어를 정과(正課)에서 수의과목으로 끌어내려 될 수 있는 한, 「조선어」를 과(課)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1938년 3월에 행한 조선교육령의 개정은 학제상 차별교육을 완화된 것이 되지만 문화의 말살은 한층 더 강화한 것이 된다. 그리고 1941년 3월에 국민학교령을 제정하여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명케 하였다.

4차 조선교육령(1943~1945) 시기는 민족말살 정책기 또는 소위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정책기로 1943년에 '중등학교령'을 제정하여 중등학교의 수업연한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토록 하였다. 또한 형식상 수의과목으로나마 존속했던 「조선어」 및 「조선어급한문」 교과를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완전히 배재하였다. 1945년 5월에는 학도의 결전태세 확립을 위하여 '전시교육령'이라는 것을 공포하였다. 이로 7월에 각급 학교에 학도대를 결성케 하여 군사교련과 무력증강을 위한 군수지원 작업에 투입시켰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교육기관은 군사훈련소, 군수공장,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무자 양성소의 성격으로 재개편되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조선교육령의 실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911년에 공포한 '보통학교(4년제)'와 '고등보통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조선어 과목의 시간배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보통학교(4년제)	조선어급한문	6	6	6	6
	전체시간	26	26	26	27
고등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	4	4	3	3
	일본어(국어)	8	8	7	7
	전체시간	32	32	32	32

전체 배당 시간에 대한 과목 배당 시간은 높은 편이지만 문제는 조선어가 한문과 한 데 묶여서 '조선어급한문'이라는 통합 과목으로 편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당시의 「국어」 과목은 곧 일본어 과목을 의미했고 시간도 한 학년당 10시간이나 되었다. 고등보통학교의 주당 교수 시간을 보아도, 일본어 과목에 비해 배당시간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한문과 한 데 묶여 있다. 구체적으로 '보통학교규정' 중에서 국어과 교육과정 및 일본어 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전체적으로 일본어를 강조하고 조선어를 축소하며, 축소된 조선어의 교육 내용도 철저히 조선총독부의 감시 아래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하계는 인용자주)

제7조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修身, 國語, 朝鮮語, 算術, 國史, 地理, 理科, 圖書, 唱歌, 體操와 女兒를 위해서는 家事及裁縫을 加한다.

지방의 사정에 따라 前項 교과목 외에 手工과 隨意科目 또는 선택과목으로 농업, 상업, 한문 중의 한 과목을 더한다.

제8조 보통학교에 있어서 교수상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할 것.

① 국민됨의 성격을 함양하여 국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13) 일본어의 원문 번역은 박봉배(1987)를 따름.

교과목에 있어서도 항상 깊이 이에 유의해야 한다.

② 선량한 풍속을 존중하여 아동의 덕성을 함양하며, 순량한 인격 도야를 꾀하여 나아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고, 同胞輯睦의 미풍을 기르게 함은 어떠한 교과목에 있어서도 항상 이에 유의해야 한다.

③ 지식, 기능은 항상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을 가려 이를 교수하고, 반복 연습하여 應用自在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제10조 국어는 보통의 언어, 日常須知의 문자 및 문장을 알게 하여 정확히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아울러 知德을 계발하는 것을 요지로 삼는다.

제11조 조선어는 보통의 언어, 日常須知의 문자 및 문장을 알게 하여 정확히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아울러 知德을 계발하는 것을 요지로 삼는다.

제23조 한문은 평이한 한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얻게 하고, 아울러 덕성의 함양에 資케 하는 것으로써 요지를 삼는다.

제61조 보통학교의 교과서는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또는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어'가 되어버린 '일본어 교육'의 목표(10조)와 교수 방법 및 교수 유의사항(8조), 필수 과목 및 과목 선택(7조), 교과서 규정(61조)에 대해 명기하고 있으며, 조선어와 한문 교과목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조선어」와 「일본어(국어)」의 교육 목표와 내용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나, 수업 시간 배당에 있어 차이가 난다.

일제 중기의 조선교육령은 3·1 운동 이후 정책이나 행정 운영 방향을 바꾸는 데서 다듬어져 나온 제2기의 식민지교육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른바 문화정치 아래에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자유가 허용되었고 보통학교에서 「한문」을 「조선어」에서 독립시켜 조선어의 위상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민족 어문교육이 더욱더 어려워진 시기이다. 이 시기 6년제 보통학교 조선어 과목과 일본어 과목에 배당된 시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제6학년
국어(일본어)	10	12	12	12	9	9
조선어	4	4	3	3	3	3
전체	23	25	27	31-33	32-36	32-36

또 고등보통학교 조선어 교과목과 일본어 교과목에 배당된 시수는 다음과 같다. 보통학교와 마찬가지로 조선어에 대한 시수가 매우 낮게 배당되어 있다.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國語(日本語)及漢文	7	7	6	5	5
朝鮮語及漢文	2	2	2	3	3
전체	32	32	32	33	32

일제 후기는 조선의 병참기지화와 이른바 내선일체 정책이 이루어졌던 시기다. 이에 따라 우리 민족어문 교육에 대한 기회는 철저히 차단되었고 일본어 교육은 강화되었다. 이 시기 6년제 심상소학교에 배당된 조선어의 시수를 보면 전 시기 보통학교에 배당된 조선어의 시수보다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단, 조선어는 실지에 있어서 課하지 않도록 권장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사실상 조선어가 폐과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제6학년
국어(일본어)	10	12	12	12	9	9
조선어	4	3	3	2	2	2
전체	26	27	29	32-34	34	34

중등학교가 통합된 중학교의 경우, 조선어는 아예 수의 과목(선택 과목)으로 전락시켜 놓고, 소학교와 마찬가지로 개설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였으므로, 역시 사실상 폐과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관제 교육에서 우리 민족어문의 교육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제 강점기 관제 교육과정은 ‘조선교육령’과 그에 따른 각급 학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령’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급 학교 규정에 제시되어 있어서 교육과정의 이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각급 학교 규정은 ‘교과목 및 교칙’ 항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지도상의 유의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별로 고유한 장이나 절을 할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목표, 내용, 방법이 체계적인 분화를 이루고 있는 근대적 교과 교육과정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 조선어 교육의 내용은 일본어 교육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하위 영역은 읽기, 해석, 암송, 書取, 작문으로 되어 있다. 언어 기능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으며 민족 정신이나 문화에 대한 것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어 교육에 준하여 가르친다는 것은 민족 어문 교육의 차원이 아닌 외국어의 차원으로 우리말을 가르쳤다는 의미가 된다.

더욱이 일제 말기에는 각 학교마다 형식상 조선어 과목은 수의 과목으로

로 하고, 시간 배정에 반영은 시켰으나 사실은 유명 무실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민족어 말살을 기도하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미군정기의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1) 미군정기 어문교육 개관

광복 직후 미군정기에 해당하는 교수요목기(광복 이후~1954년)에는, 한글을 깨치는 것이 어문교육의 지상 과제였다¹⁴⁾. 이 점은 당시 초등학교 전 수업시수 가운데 30%나 국어수업으로 충당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군정기에 만든 ‘교수요목’과 이 시기에 배당된 국어과 수업시수만 보아도 국어과목이 도구적 성격을 지닌 중심 교과임을 알 수 있다.

‘교수요목’은 1946년 9월 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수요목’을 공포한 것으로서, 우리 교육사상 최초로 성문화된 교육과정으로 전통적인 교과주의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경험주의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 한편으로는 식민지 시기에 정착된 국가주의적 성격도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국어과 교수요목은 국민학교와 중등학교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은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 주의’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국민학교 국어과 교수요목의 내용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 요지>

1. 바른 말과 맞는 글을 깨쳐 알기
2. 바르고 똑똑하게 나타내는 힘 기르기

14) 광복 당시 우리나라 문맹률이 78%에 달했기 때문에 한글깨치기야말로 교육활동의 기초도구로서, 한글 보급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3. 지혜와 도덕심을 북돋우어 국민된 도리와 책임을 깨닫기

4. 국민성과 국문화를 밝혀 국민 정신 기르기

<교수 방침>

1. 국어의 특질을 알고 자유롭게 똑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2. 국어와 국민성과 국민의 품격을 위하여 국어애로 개발 다짐

3. 국어사, 국문학사를 알게 하여 국문화를 한층 더 빛나게 하고, 세계 문화에 기여하도록

<교수 사항>

(읽기, 말하기, 듣기, 짓기, 쓰기로 나누어 기술함)

<교수 주의>

1. 모든 학과에서 말과 글을 바로 가르치기

2. 글씨도 바르고 빠르게 잘 쓰도록 하기

3. 우리 국민성에 비추어 특질을 알고 힘쓸 것 알기

중등학교 국어과 교수요목의 내용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 요지>

1. 국어 이해와 사용력 기르기

2. 문화 전승, 확충, 창조하기

3. 지·덕을 열어 건전한 국민 정신 기르기

<교수 방침>

1. 국민다운 사상 감동의 표현 방법을 가르쳐 국민 애중의 생각을 기쁨

2. 국어, 국문의 사적 전통을 구명하여 국민 정신을 기르고 문화 창조의 신념 배양

3. 덕육, 지육, 체육 등의 정신과 식견을 길러 중견 국민의 사명을 깨닫게 함.

<교수 사항>

(읽기, 말하기, 짓기, 쓰기, 문법, 국문학사로 나누어 기술함)

<교수 주의>

(13개 항목으로 기술함)

‘교수요목’은 다시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 주의’의 4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국어과 교육에 대한 개관, 국어과 교육의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근대적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국민학교의 경우 교수 요지에 나와 있는 4개 항목은 ‘바른 말과 맞는 글을 깨쳐 알기’, ‘바르고 똑똑하게 나타내는 힘 기르기’, ‘지혜와 도덕심을 북돋우어 국민된 도리와 책임을 깨닫기’, ‘국민성과 국문화를 밝혀 국민 정신 기르기로 나열되어 있는데 국어과에 해당하는 내용과 교육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위계 없이 나열되어 있어서 국어과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는 중등학교의 경우도 유사하다. 교수 사항에 나와 있는 영역은 국민학교의 경우 읽기, 말하기, 듣기, 짓기, 쓰기의 다섯 영역인데 기능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중등학교의 경우는 읽기, 말하기, 짓기, 쓰기, 문법, 국문학사의 여섯 영역인데 ‘문법’과 ‘국문학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문학적 경향이 느껴진다. 중등학교까지 짓기(작문)와 쓰기(글씨쓰기)를 구분하고 있어서 글씨쓰기를 상당히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듣기 영역은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 시기 교수요목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요목은 문자 그대로 ‘요목’에 불과한 빈약한 문건이지만 국어 교과에 언어수행과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어교과의 영역을 읽기·말하기·듣기, 짓기, 쓰기의 다섯으로 구분함으로써 이후의 교육과정의 뿌리가 되었다(최현섭 외, 1996)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결어

이상으로 개화기부터 미군정기까지의 정부 차원에서 공포된 교육과정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교육과정’이라는 명칭도 없었을 뿐더러, 교육과정의 체계에 대한 의식도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개화기의 교육 관련 법령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근대적인 교과 구분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그러한 교과관에 따라 ‘국문’이나 ‘국자(한글)’에 대한 교육이 다른 교과와 다른 과는 구분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교과와 하위 범주나 과목과의 구분 등이 명확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언문일치라는 시대적인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문에 대한 강독식 수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어문교육과정사의 단절기이다. 주체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의 교육과정이 공포된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한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고, 그에 따라 학교 교육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글과 말에 대해서는 말살을 목적으로 그 압박의 강도가 컸던 만큼 민족 어문 교육과정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어문 교육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헌들을 찾아서 당시 교육 내용들을 재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민족 어문교육 연구사와 긴밀히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다. 미군정기에는 군정청에서 공포된 ‘교수요목’이 공포되는데, 이에선 어문교육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개념 구분이 수립되기 시작하므로 현대적인 교육과정(curriculum)의 전신이라 할 만하다.

참고자료와 문헌

- 박지태 편, 대한제국기정책사자료집 (VI) -교육관보-, 선인문화사.
개화기교과서총서(영인본), 아세아문화사.
중등국어교본 상·중·하 사본
소학교령 사본
조선교육령 사본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기준」(교수요목~7차), 교육부, 1997.
박봉배, 『한국국어교육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2.

■ Abstract

A Study of Curriculums in late¹⁵⁾ language-education

Kim, Hye-Ju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curriculu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re-modern times. Through this general survey from the time of enlightenment to time of US military government, the predecessor of modern curriculum will be reconstructed.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an imperial ordinance of education' promulgated by Gojong shows needs of modern language education and the concepts of modern curriculum. In this ordinance, there are lessons of school work and necessary subjects of a course. Under the rule of Japanese, 'order of education in Chosun' promulgated by Japanese imperialism shows gradual erasure of korean language & letters. And in time of US military government, 'a syllabus of lectures' promulgated by US military government office is principal items. This syllabus contains the main teaching points, purpos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pecially a division of contents.

According to this argument, curriculu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re-modern times is the product of its hard work to modernization.

key word : curriculum, korean language education, modernization, an imperial ordinance of education, a syllabus of lectures

15) 근대, current 혹은 the present age과 상보적 개념